《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2026.1.1.부터)

(단위 : 원)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6.1.1.부터)

(단위 : 원)

분류번호	분 류	금 액	본인부담금 (일반 15%)
가-1	30분 이상	17,450	2,618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가-4	120분 이상	43,430	6,515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가-6	180분 이상	57,020	8,553
가-7	210분 이상	63,530	9,530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2

◆ 방문목욕 급여비용 (2026.1.1.부터)

(단위 : 원)

분류번호	분 류	금 액	본인부담금 (일반 15%)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13,349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12,035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0,100	7,515

◆ 장기요양급여비용구성

구 분		비율	내 역
월 이용 한도	보험료	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서비스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보호자와 보증인)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나. 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신체지원		가사지원	
배설 도움	□ 화장실 등에서의 배설 도움 □ 기저귀 교환	**조리**	□ 일반적인 가정 요리 □ 식사의 상을 차리는 일 □ 식사의 뒷정리, 식기 세정
입욕 도움	□ 입욕, 샤워 도움 □ 수욕, 족욕, 청결	**청소**	□ 대상자 본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외출 도움	(공공 교통기관·휠체어·도보 등에 의한다) □ 통원 도움 □ 쇼핑 동행 □ 산책	**세탁**	□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만 (평상복·잠옷·속옷·시트·타올 등)
이동 지원	□ 체위 변경 □ 실내 이동 □ 휠체어 등에의 이승	**침구 정돈**	□ 이불의 접고 펴기 □ 이불 말리는 것 □ 시트 교환
식사 지원	□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쇼핑**	□ 식품의 쇼핑의 대행 □ 생활필수품의 쇼핑의 대행
기타	□ 세면, 양치질, 이발 □ 손톱깎이 □ 옷갈아입기 도움 □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기타**	□ 대필, 대독 □ 대상자 본인이 복용하는 약 취급 □ 대상자 본인의 편지의 투함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른다

♣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해제한다.